

#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개편,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

- 안 제2조제2항3호, 4호, 6호, 7호
- 안 제2조제3항1호, 2호, 3호, 4호

나. 참조규정 변경

- 안 제2조제5항 중“제2항제8호”를“제2항제10호”로 변경

다. 대외직명 변경

- 안 제4조제4항 중“총무담당”을“총무팀장”으로 변경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1. 12. 13. ~ 2022. 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별도의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**행정과장**”을 “**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행정과장**”을 “**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**제1670부대 1·3대대**”를 “**제8087부대 1대대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**제2항제8호**”를 “**제2항제10호**”로 한다.

3. 강원동부보훈지청장
4.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6. 제8087부대1대대장
7.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
제4조제4항 중 “**총무담당**”을 “**총무팀장**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강릉보훈지청장</u></p> <p>4. <u>평창교육장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제1670부대 1·3대대장</u></p> <p>7. <u>국군 제557-5 안보지원대 지 역담당관</u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1. 총무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</p> <p>2. 민방위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</p>	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강원동부보훈지청장</u></p> <p>4. <u>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8087부대1대대장</u></p> <p>7. <u>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</u>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통합방위업 무 담당부서장</u></p> <p>2. ----- <u>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</u></p>

<p>3. 예비군담당 간사 : <u>제1670부대 1·3대대</u>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</p> <p>4. 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작전업무 담당과장(병중사태), <u>제1670부대 1·3대대</u> 작전과장(을중사태 이상)</p> <p>5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제2항제8호</u>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읍.면의 본부장은 읍, 면장으로 하고, 상황실장은 <u>총무담당</u>으로 하며,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3. ----- <u>제8087부대 1대대</u> -----</p> <p>4. ----- ----- <u>제8087부대 1대대</u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제2항제10호</u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<u>총무팀장</u>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통합방위법

###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

- ① 생략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 소속으로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생략
  1. ~ 5. 생략
-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### 제9조(통합방위 지원본부)

-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서 시·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.
- ② 생략
  1. ~ 5. 생략
-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심재호
연락처	(033) 330 - 2019